한국문화관광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

가. 감사개요

■ **감사기간** : 2014. 6. 2. ~ 6. 13. (8일간)

■ **감 사 반** : 감사담당관 등 6명 (실지감사)

■ 감사내용

○ 2010년 ~ 2014년 현재까지 기관 운영 및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
나. 감사결과

(단위: 천 원, 건)

합 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		1	시비사 고키		게걸사 고리		행정상 조치					모범	현지
		시정	주의	개선	권고	통보	사례	시정					
건수	금액	인원	건수	인원	건수	금액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
13							1	6	2	1	1	1	1

※ 첨부서류: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<u>감사처분 요구내용</u>

(한국문화관광연구원)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	ㅇ 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	ㅇ 시정요구
	- 「복무규정」등 상위법의 근거 없이 「외출등록부 대외활동	- 법적 근거 없이 운영
	관련 업무처리계획」을 만들어 개인대외활동과 관련한 외	되고 있는 개인대외
	출을 1개월 24시간(개인용무 외출 포함) 범위 내에서 허용	활동 외출을 폐지하
	하고, 직원은 동 개인대외활동을 활용하여 대학출강, 외부	고, 복무규정을 정비
	기관 세미나, 자문회의, 토론회 등에 참석	하여 규정에 맞게 복
	- 지각·조퇴·외출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규정 미비 및 공제	
	미실시, 외출 후 퇴근 허용, 조퇴 미관리 등 복무관리 부적정	요구
2	ㅇ 국고보조사업 정산 부적정	ㅇ 주의요구
	-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종료 후	- 「보조금관리에관한
	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나, 국고보조사업 25건	법률」에 따라 정산
	('10~'13) 6,955백만 원에 대해 기간 내 정산 미보고로 정산지연	보고를 철저히 하고,
	- 국고보조사업 관리 이원화로 정산 지연 및 사후 관리 부실	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
	• 연구실은 사업비 집행, 정산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고,	
	행정실은 연구실에 증빙서류 제공 및 국회 등 외부기관 정산	
	관련 자료 제출 등 사후 관리	요구
3	ㅇ 연구용역사업 추진 절차 부적정	ㅇ 주의요구
	- 「연구사업기본규정」제11조에 따라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	- 「연구사업기본규정」에
	거쳐 연구책임자 선정 및 연구 과제를 배정하여야 하나,	따라 연구책임자 선정
	'10년부터 '13년까지 총 587건을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연구	및 연구과제 배정, 연구
	실장이 임의로 연구책임자 및 연구과제 선정	결과 평가를 추진하
	- 「연구사업기본규정」제19조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원장 보고와	도록 '주의' 요구
	함께 연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간보고서를 종합 검토하	
	여야 하나, '10년부터 '13년까지 총 217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	
	9개월 이상 소요되는 중기과제 16건에 대해서만 중간보고서 검토	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4	○ 위탁연구용역사업 계약관리 부적정- 「국가계약법」제30조 및 「회계규정」에 따라 2천만 원	o 주의요구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
	이상의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아야하나 '10년부터 '13년까지 24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3건을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서면견적서를 제출받아 체결하였음	「히게구저 레 메리
	·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위탁연구 용역사업 평균 낙찰률(97.2%)이 서울지방조달청 일반경쟁방식 연구용역 체결 평균낙찰률(944%)과 비교할 때 더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어 기관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 초래	
5	○ 특별휴직자 연구 결과 보고 부적정 - 연구원 인사규정 제28조 및 특별휴직 내부지침에 따라 특별 휴직자는 휴직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 해야하나, 약 1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는 등 관련규정 위반 연도 성명 휴직기간 대상기관 결과보고 (연구위원) *11.3.1~'12.2.29 *2010 (연구위원) *11.3.1~'12.2.29 ***(선임연구위원) *12.3.1~'13.2.28 ***(선임연구위원) *14.5.22	○ 주의요구 -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미준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계 자 '주의' 요구
6	 ○ 자료 구입 및 관리 부적정 - 연구원의 소장 및 대출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연구과제수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장자료와 동일자료를 중복 구입 · 2010~2014. 6. 13. 3권 이상 복본을 구입한 자료는 총 90종, 125권 - 대출자료를 대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납 받지 않고 동자료를 중복 구입하는 등 자료를 부적정하게 관리 · 2010~2014. 6. 13. 3권 이상 복본을 구입한 90종 자료중대출기한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 자료는 총 106권에 이름('14.6.13.기준) 	○ 주의요구 - 자료구입시 사전에 소장 및 대출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불필요하게 자료를 중복하여 구입하고, '자료관리규칙' 제20조를 위반하여 소장자료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에 대하여 '주의'요구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7	 ○ 기본연구과제 예산집행 부적정 - 「한국문화관광연구원 회계규정」제27조에 따르면, 예산은 예산과목별로 확정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, - 2013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금 연구사업비(240,000천원)중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여비 2,270천원(14건)및 업무추진비 9,829천원(148건)을 부적정하게 임의로 초과하여 집행 	않고 집행한 것에 대 하여 '주의' 요구
8	 ○ 소속직원 사례비 지급 부적정 - 기획재정부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라 소속 직원은 문화관광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나 ・자체 「예산통제지침」에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기관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정책논문집 및 웹진 기고료, 기관 주최 토론회 및 행사에 대한 행사진행비 및 사례비 등을 지급 	집행지침」에 따라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'개선' 요구
9	○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- 「공기업,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」은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, 개인별 적립 현황 및 사용 실적 등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결과 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	○ 개선요구 -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는 등 공무항공 마일리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'개선'요구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0	ㅇ 근무시간 내 외부출강 관리 부적정	ㅇ 권고
	- 「인사규정」제25조 및 복무규정 제9조는 겸직허가 및 외부	-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
	출강 요건을 원장의 허가만 받도록 하고 있고 출강횟수,	하지 않도록 근무시간
	시간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음.	외에 외부출강을 실
	 - '10년부터 '14까지 연 출강인원 94명 중 77명(81.9%)이 근무시간	시토록 하고 외부출
	내 외부출강을 실시하고 있어 업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	강 세부 요건을 마련
		토록 '권고' 조치
11	○ 정보통신실 DB자료 재난대책 미흡	o 통 보
	- 「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」제9조 및「문체부보안업무규정	
	시행세칙」제85조에 따르면, 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발생	
	에 대비하여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실과	
	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위치한 안전한 장소에 설치	
	하여 재난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으나,	
	- 정책연구보고서와 관광분야 전문(관광지식정보시스템)	
	DB자료 등 총 126,079건의 자료를 연구원 정보통신실내에	
	보관하고 있어, 화재 등의 재난상황 발생 시 주요 데이터	
	손실에 대비하여 원격지 백업 구축이 필요	
12	ㅇ 대국민 중심의 관광통계 생산과 과학적 관광정책 선도	ㅇ 통보(모범사례)
	-홈페이지,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관광관련 각종	-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
	정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	국민들에게 관광 관련
	- 관광통계, 정책&연구, 관광자원 등 7만 4천여건의 관광지식	콘텐츠를 제공하고 관광
	정보를 DB화함으로써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부터	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
	2010년 통계품질 우수기관 선정 및 2011년 골드클래스 통계	
	품질 인증을 받는 등 정부 3.0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	
	하는데 기여	등 격려 조치
13	ㅇ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흡	ㅇ 현지시정
	- 「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원재활법」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	- 규정에 따른 장애인 의무
	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	고용 인원 달성을 위해
	으로 고용하여야 하나, 법에 따른 의무고용비율에 미치지	노력하도록 '현지시정'
	못하여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('11년~13년, 46,364천원)	조치